

상담심리지도사 1급과 2급 자격관련 Q&A

1. 학과별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도 상담심리지도사 자격발급이 가능합니까?
☞ 학과별 연회비 납부는 필수 규정입니다.
 2. 학과 커리큘럼 중 타 학과 개설 과목을 활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러한 과목도 이수 과목 인정이 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 타 학과 과목 이수도 인정됩니다.
 3. 전국대학상담학과협의회 가입 전의 졸업생의 경우도 자격증 취득이 가능합니까?
☞ 귀 학과에서 당해 연도(2023년)에 본 협의회에 가입하실 경우 당해 연도 4학년생(2023년 8월 졸업예정자)들부터 상담심리지도사 자격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4. 편입생의 경우 편입 전 대학의 학과에서 취득한 과목이 인정됩니까?
☞ 인정됩니다. 편입 전 대학 성적증명서 추가제출 필수.
 5. 시간제학점은행을 통해 일정 과목의 학점을 이수한 편입생의 경우는 자격취득이 가능합니까?
☞ 가능합니다.
 6. 본 협의회 소속 상담학과를 졸업하였으나 이수과목 부족으로 자격증을 발급 받지 못한 경우, 졸업 이후 시간제학점은행 또는 대학원에서 부족한 과목을 이수하였다면 자격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7. 상담심리지도사 인정 과목이 전국대학상담학과협의회에서 요구사항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합니까?
☞ 귀 학과에서 개설 중인 과목명을 전국대학상담학과협의회의 e-mail kacdem@hanmail.net로 문의하시면 자격위원회 심의를 거쳐 빠른 시일 내 알려드리겠습니다.
 8. 상담심리지도사의 개별 신청이 가능합니까?
☞ 자격발급관련 서류는 해당 학과를 통해만 일괄 접수받으며 개별 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
 9. 자격심사신청서의 학점란에는 무엇을 기재합니까?
☞ A, B+ 과 같은 성적학점이 아닌 3학점, 2학점과 같은 이수학점을 적는 란입니다.
 10. 자격심사를 통과하였으나 신청학기에 졸업을 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 자격발급 기준 중, 졸업자 자격을 확보하지 못했으므로 탈락합니다.
(단, 다음 졸업시기에 자격증발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는 졸업예정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만 제출하면 됩니다. 이때, 자격증 발급비는 10,000원입니다.) - 제20차부터 적용
→ 학과의 신청업무담당자는 신청명단에 추가할 때, 비고란에 이전 탈락회차를 꼭 적어주십시오.
- * 기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국대학상담학과협의회 e-mail kacdem@hanmail.net을 이용하여 주시면 자세히 답변해드리겠습니다.